

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안내

□ 면제 대상

- 입사지원서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 - 1) ‘두 귀의 청력 손실 80dB(기존 청각장애 2·3급)’인 사람
 - 2) ‘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’인 사람

□ 제출 서류 등 안내

- (제출서류) 의사진단서 원본 (의사 소견서 불인정)
 - * 입사지원서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-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-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 - 1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
 - 2)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
 - 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117호)에 따라 검사
 - 3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,
-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인천항만공사 입사지원 시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.

□ 신청방법

- 입사지원서 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,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별도 제출
 - 증빙서류 제출기한 : **2022.11.10.(목)**까지
 - ※ 증빙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도달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

* 서류 제출 주소

[22006]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34층
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실 채용담당자 앞

- 제출한 서류 검토를 통해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별도 통보 예정
 -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되었더라도, 듣기점수 적용 제외 비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 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간 공공기관 입사지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